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이 해당 자금이 지원되지 아니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과 상이한 경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를 구입하려는 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격이 표시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자금이 지원된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및 수량, 농업기계의 자금 지원 방식 및 지원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II. 검토의견

1. 적용례 규정의 명확화(안 부칙 제2조)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신설되는 안 제4조의2제1항의 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¹⁾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적용례는 부칙의 시행일만으로는 개정안의 규정이 누구에게 어떠한 행위를 대상으로 어느 시기부터 적용되는 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부칙 규정을 의미함. 이를 위해 적용례는 기본적으로 “이 법 시행 이후 00하는 경우(사람, 자, 것, 분 등)부터 적용한다”의 형태로 규정함.²⁾

따라서 적용례의 대상이 되는 개정안 제4조의2제1항의 각 호의 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마련함.

[안 부칙 제2조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제2조(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u>같</u>	제2조(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u>제외</u> 에 관한 적용례) ----- ----- <u>자</u>

1) 안 제4조의2(부당행위에 대한 지원의 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 판매 시 해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한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2)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847

<u>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u>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 판매 시 해 당 자금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자에 게 판매하는 동일한 농업기계의 가 격을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로 농업기계의 가격을 부당 하게 인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 정조치 명령을 받은 ----- -----.</u>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최 기 도)